

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22-040호

시정권고 재결

2022년 10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21일
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

사 건 명 : 어선 영신호·모터보트 바다여행 충돌사건

피요청자 : 김** (부산광역시 **** * ***, **** ***)

시 정 권 고 서

귀하가 소유하고 선장으로 승선한 모터보트 바다여행이 2021. 10. 4. 00:32경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 남동방 약 2.5해리 해상인 북위 35도 03분 19초·동경 129도 09분 14초에서 어선 영신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.

이 충돌사고는 영신호가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, 바다여행이 교통안전특정해역과 제한구역이 겹치는 부산항 입구 부근 어로작업 금지해역에서 낚시 활동을 하면서 경계와 경고신호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운항 중 낚시 장소를 준수하고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